

# 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위원	이범연 위원	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주민생활지원과장)	일 자	질의	2014년 12월 10일
			답변	2014년 12월 11일
회 의	제20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(2)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			

## 질문요지

-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(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) 증액사유

## 답변내용

### ○ 복지수당 지원기준

-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보고가 완료된 종사자
- 해당시설 1년 이상 상시근무자
- 소득신고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급

### ○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현황 및 계획

분 야 별		2014년		2015년		비 고
		5년이상	5년미만	5년이상	5년미만	
노 인	월 정사노인요양원 외 8개소	23	55	24	68	
장애인	다소니 외 3개소	3	7	16	26	
다문화	다문화가족지원센터	-	5	2	3	
아 동	지역아동센터	2	1	2	2	
	아동복지시설	3	3	3	3	
자 활	지역자활센터	2	2	3	1	
총 금 액		164,520천원 지원		238,320천원 도비내시		

### ○ 증액사유
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원변동은 없으나 도에서 종사자가 매년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예산을 교부하였음.
- 하반기에 실집행액을 파악하여 3회 추경때 예산 조정.